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59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조경태·김상욱·곽규택

이헌승 • 백종헌 • 김용태

강선영 · 서명옥 · 김선교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

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2 중 "탐방로"를 "탐방로(쉼터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2호 및 제5호"를 "제2조제2호 · 제5호·제8호"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숲속야영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	①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	
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	
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	
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등산로 또는 <u>탐방로</u> 의 설	4의2 <u>탐방로(쉼터</u>
치・정비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	②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	
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	
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u>제2조제2호 및</u>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 11. (생 략)

<u>제2</u> 조제2호·제5
호·제8호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숲속야영장
3. ~ 11. (현행과 같음)